

기초과학연구원 원장 초빙 공고

기초과학연구원은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연구를 통해 창조적 지식 및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『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』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. 비전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기초과학연구원을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으로 이끌어 주실 분을 아래와 같이 모시고자 합니다.

□ **공모직위** : 기초과학연구원 원장(1명)

□ **임 기** : 임명일로부터 5년

□ **응모자격**

- 연구원을 세계적 연구소로 이끌 비전과 전략을 가진 분
- 기초과학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정책적 식견이 풍부한 분
- 기관운영에 대한 경험과 사회적 덕망을 가진 분
- 경영혁신 능력과 리더십을 갖춘 분
- 연구원 정관 제9조에 해당되지 않는 분 (첨부 공고문 참조)

□ **응모방법**

- 직접 제출,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 제출(invitation@ibs.re.kr)

□ **제출서류**

- 신청서 1부
- 이력서(사진부착) 1부
- 연구실적목록 1부
- 자기소개서(A4 용지 5매 이내) 1부
- 직무수행 계획서(A4 용지 5매 이내) 1부
- 최종학력 증명서 1부
- 경력증명서(주요경력) 1부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1부
- 개인 추천서(3인 이내, 선택사항) 각 1부
- 단체·기관 추천서*(선택사항) 1부

※ 신청서, 자기소개서, 직무수행 계획서,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는 지정된 양식에 따라 제출

* 단체·기관 추천서의 경우 해당 단체·기관에서 공문으로 기초과학연구원에 제출 필요

- 추천 단체·기관 : 국가과학기술연구회,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, 전국자연과학대학장협의회, 한국공과대학장협의회, 한국공학한림원,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, 한국과학기술한림원,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, 한국연구재단,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, 재독한국과학기술자협회, 재영한인과학기술자협회, 프랑스한인과학기술협회, 재일한국과학기술자협회

□ 제출기한

- 2025년 3월 17일(월) 18시까지(한국 표준시)
※ 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하며,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습니다.

□ 접수처

- [34126]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55 기초과학연구원 기획팀

□ 기 타

- 제출된 서류는 심사자료로만 활용되며, 서류의 반환은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처리합니다.
-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선임추천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심사와 관련된 제반 기준 및 절차, 임명, 계약 등에 관한 사항은 후보자의 국적이 외국인인 경우에도 국내법 및 연구원 내부 규정 등을 따릅니다.
- 기타 세부사항은 기초과학연구원 홈페이지(www.ibs.re.kr)를 참조하시거나 기초과학연구원 기획팀(T. 042-878-8192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5. 2. 18.

기초과학연구원 원장추천위원회

[참부]

기초과학연구원 정관 제9조(임원의 결격사유)

제9조(임원의 결격사유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연구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
1. 국가공무원법 제33조*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2. 연구원의 임원에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* 국가공무원법 제33조(결격사유)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하여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가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
나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
다.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
라.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
마.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